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한국 전통 문화 대학교 설치법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○○○○○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유산 분야 종사자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특별전형 선발 과정 및 대상을 확대하고,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대학원 석사·박사통합과정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한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10조제1항 중 “「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”를 “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”로, “학사과정의 학생”을 “학생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”을 “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한다.

1. 「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
 2. 「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
 3. 「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승자
- ② 총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학생의 인성·소질·적성·능력·발전가능성·경험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교원 또는 직원(이하 “입학사정관”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

제11조제2호 중 “통합과정:”을 “연계과정: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석사·박사 통합과정: 1년 이내
별표 부속시설 등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 지]

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[별표]

부속시설등(제13조제1항 관련)

시설	구분	
연구시설	연구용 실험실, 대학원 연구실, 국가유산 콘텐츠 개발원, 전통문화 연구소, 국가유산예방보존연구소, 국가유산정책연구실, 전통건축도자센터 및 그 부대시설	
부속시설	공통	박물관, 교수·직원·대학원생·연구원의 주택 또는 아파트, 공관, 세계유산지속가능센터, 연구실안전관리센터, 산학협력단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, 학교기업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
	인문·사회계열	유적 발굴 실습실, 전통교양교육원 및 그 부대시설
	자연과학계열 및 공학계열	학술림, 전통조경 실습실, 고건축물(古建築物) 복원 실습장, 공학교육지원센터 및 그 부대시설, 건축문화유산 정보 분석교육센터
	예능계열	전통미술공예 실습실, 전통문화상품 개발실 및 그 부대시설, 전통기능교육센터
교육기본 시설	강의실, 실험실습실, 교수연구실, 행정실, 도서관, 학생회관, 체육관, 대학본부 및 그 부대시설	
지원시설	강당, 정보전산원, 실습공장, 학생기숙사 등 학생주거용 시설 및 그 부대시설, 보건진료소, 공동실험실습관 및 그 부대시설	
비고: 대학원, 단과대학 또는 학과의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부속시설등은 국가유산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거나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.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입학전형) ① 총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「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중에서 특별전형으로 학사과정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. <u><신 설></u>	제10조(입학전형) ① ----- -----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----- ----- ----- ----- 학생 -----.
<u><신 설></u>	1. 「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
<u><신 설></u>	2. 「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
<u><신 설></u>	3. 「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승자
<u><신 설></u>	② 총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학생의

	<u>인성 · 소질 · 적성 · 능력 · 발전 가능성 · 경험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교원 또는 직원(이하 “입학사정관”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</u>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. 제11조(수업연한)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1. (생 략) 2. 학사 · 석사 <u>통합과정</u>: 1년 이내 3. (생 략) <u><신 설></u>	③ 제1항 및 제2항----- ----- -----. 제11조(수업연한) ----- ----- ----- 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<u>연계과정</u>: ----- -- 3. (현행과 같음) 4. <u>석사 · 박사 통합과정</u>: 1년 이내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	
연 락 처	(041) 830-7223